

도시관리계획(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도시관리계획(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032-560-5773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
2019. 5. 20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결정(변경)취지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사항임

2. 위치

○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, 왕길동 일원

3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 없음)

나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 없음)

다.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 없음)

라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(변경)

○. 단독주택용지(A-1) : 획지면적변경

기 정					변 경						
도면 번호	가 구 번 호	면적 (㎡)	획 지		비고	도면 번호	가 구 번 호	면적 (㎡)	획 지		비고
			위치	면 적(㎡)					위치	면 적(㎡)	
A-1	68	2,302.8	1	340.0		A-1	68	2,302.8	1	340.0	
			2	877.0					2	873.6	
			3	692.1					3	695.5	
			4	393.7					4	393.7	

○ 단독주택용지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가구번호	위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68	2, 3	획지면적변경	적정규모 획지계획 변경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

마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 (변경 없음)

바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 (변경 없음)

4. 지형도면 : 별첨(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) : 구보게재 생략